

항공장애표시등 설치신고는 관할 지역의 지방항공청으로

국토교통부 공항안전환경과 (☎ 044-201-4345)

▶ 항공기의 항행안전 강화를 위하여 항공장애표시등 설치관리업무를 통합적으로 일괄 관리할 예정이다.

- 공항에서 15km밖에 설치하는 항공장애표시등은 지금까지 각 지자체에서 설치신고·수리 및 관리상태 점검 등의 관리업무를 수행하였으나, 2014년 1월 1일부터 지방항공청(서울지방항공청, 부산지방항공청)에서 업무를 하게 된다.

- 따라서, 2014.1.1부터 항공장애표시등을 설치하는 자는 관할 항공청인 서울지방항공청이나 부산지방항공청에 설치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리상태에 대한 점검도 관할 지방항공청에서 실시하게 된다.

* 지역별 관할 지방항공청

- 서울, 인천, 경기, 강원, 충청, 전북 : 서울지방항공청
- 경상, 전남, 제주, 울릉도(독도) : 부산지방항공청

☞ (참고) 국토교통부 홈페이지>정보마당>법령정보>항공법 시행령

<모든 항공장애표시등 설치신고는 관할 지방항공청에.>

- ▶ 추진배경 : 항공장애표시등의 체계적·효율적 관리 및 항공기 항행안전확보
- ▶ 주요내용
 - ① 모든 항공장애표시등 설치신고는 관할 지방항공청에.
- ▶ 시행일 : 2014.1.1.